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5
----------	------

제출년월일 : 2008. 6.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산시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안산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안산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등 세정분야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인원,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70조
- 「지방세법」 제73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8. 05. 21. ~ 2008. 05. 31.(10일간)

기타 참고사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
4.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징수포상금 심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폐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산시 시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산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안산시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적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세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소관 실·과		세정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안상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서근식
	담당자 성명·전화	손석주 (행정 2198)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본청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u></p> <p><u>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본청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u></p> <p><u>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④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u></p> <p><u>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u></p> <p><u>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4조(지방세 등 심의위원회)①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1.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u></p> <p><u>2.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u></p> <p><u>3.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심사에 관한 사항</u></p> <p><u>4.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징수포상금 심의에 관한 사항</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u>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